

국가보조금, 국책과제, 국가 R&D 사업에서 과제수행 불이행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사  
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실형선고 판결 사례



대표이사 징역 10월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898 판결

### 사안의 개요

- (1) 피고인 - 주관기관 회사법인 대표이사 vs 피해자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2)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회사의 경영상황 매우 어려움 - 7억 대출금 변제 못하고  
신용카드 돌려받기, 직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상황
- (3) 총 사업비 2억3천6백만원, 자기 부담금 약 4천2백만원 과제, 선정되어 정부지원  
금 111,510,000원 교부 받음
- (4) 정부지원금 입금 4일 후 인출, 대출이자, 퇴직금, 임금 등 용도 외 사용 시작

(5) 자기 부담금 - 연구원 인건비 현물 출자 없음, 실제 인건비 지급 없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6) 경영악화로 사업비 교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후 참여연구원 퇴사, 개발 중단 등 성과 없음, 결과실패

**판결요지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인정**

LGU+, 쿠팡 등에 협찬광고 영업을 진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나 게임제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러 자구책 중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소스코드 라이선싱 계약 단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대출이자, 퇴직직원의 임금 지급 등에 유용까지 하였음에도 ㉞C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9. 말경 경영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한 점, 과제수행인력표상 게임제작 참여직원인 L, M, N, I, G, J, O 중 L, J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2015. 5.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임금체불, 경영악화 등으로 퇴사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㉞C의 7억 원 상당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보조금 신청·교부 당시 ㉞C가 사업계획에 따라 게임제작을 완료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처벌수위 - 징역 10월 실행 선고, 양형의 이유

## 1.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고도 당초 사업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C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게임제작 용도로 사용되었고, 유용된 보조금도 대부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회사 오너인 대주주 지시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 명의상 대표이사의 책임 회피 불가

회사운영에 관한 실권이 없는 대표이사로서 명의상 대표이사, 소위 명목 사장이더라도 법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어서 본인은 권한이 없다는 변명만으로는 관련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협약서에서 서명 날인한 회사법

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운영자는 대주주 회장이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를 대주주 오너의 지시로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결과 연구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 연구책임자는 법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연구비를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으로 추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들면,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3386 판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출한 대표이사가 그 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에서도 외부로 인출된 연구비의 사용관련 회계자료,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과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연구비 유용 및 횡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액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유용 및 횡령에 대한 책임은 그 금액과 비중에 따라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출된 금원이 아니더라도 연구비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 있다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인출된 금원의 용도 외 사용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겠지만, 다른 금원을 연구비로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소위 일시적 유용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연구과제에 지출된 비용을 모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책과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